



제338회 임시회
2015. 3. 5.(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2월 23일
- 회부일자 : 2015년 2월 24일

3.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개정
(안 제4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7조)
- 정보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사유 및 기피 신청, 회피 (안 제6조의2)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014. 11. 19.)으로 “행정안전부”가 “행정자치부”로 조직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본 조례안은 ‘정보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위

하여 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제1항)

○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6조의2 제2항),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규정하였는 바(안 제6조의2 제3항), 이는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법리적, 내용적 문제는 없음.

○ 다만, 최근 5년간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 개최 내용을 보면 위원회 심의안건 내용의 범위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과 1년 단위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심의에 국한하고 있어 위원회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동 조례 제6조(정보화위원회의 설치)제1항제3호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를 대비하여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 운영현황

연 도 별		개최시기	심 의 안 건
2014	1회	2014.03.07	2014년 지역정보화시행계획 심의
2013	1회	2013.02.26	2013년 지역정보화시행계획 심의
2012	1회	2012.01.31	2012년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 심의
2011	2회	2011.03.22	2011년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 심의
		2011.01.14	제3차 충청북도 정보화 기본계획(안) 완료보고
2010	1회	2010.02.23	2010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 현황

구 분	성 명	성별	소속기관	직 위	위촉기간
계	15명				
위원장	정정순	남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위촉직	박한범	남	충청북도의회	도의원	'15.2.1 ~ '17.1.31 (2년간)
	박광순	남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춘	남	영동대학교	정보통신보안학과 교수	
	윤취영	남	한국교통대학교	IT응용융합학과 교수	
	김영렬	남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신문선	여	건국대학교(충주)	컴퓨터공학과 교수	
	정경자	여	충청대학교	국방정보통신과 교수	
	이선복	남	(주)임베디드솔루션	대표	
	최미숙	여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현아	여	충청일보	문화부 기자	
	금은영	여	충북지식재산센터	브랜드컨설턴트	
당연직	김장희	남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이차영	남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조병옥	남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